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2018. 6. 4 중소기업부 고시 제2018-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 및 제7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이하 “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하“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3.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을 수행하는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을 말한다.
6.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과제 관리 및 협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협업사업심의위원회”란 협업체의 협업계획 선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란 협업지원사업의 관리 및 협업계획의 평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9. “전담기관”이란 협업지원사업의 선정심의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원기관”이란 자금, 보증, 평가, 기획 등 협업사업계획의 평가 및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협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란 협업기업의 사업이행 확인, 협업과제에 대한 코칭·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과 협업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 2 장 협업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협업사업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선정 심의 등을 위해 협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협업기업 선정 및 협업계획 변경승인 심의
 2. 협업기업의 선정 취소 심의
 3. 협업기업 선정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협업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기타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전담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팀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팀장 또는 지점 팀장, 공인회계사 중 당연직 2명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 직원
 2.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과장
 3.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 팀장 또는 지점 팀장
 4. 금융기관 지점 팀장

5. 협업관련기관 팀장

6. 협업관련전문가

③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관리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접수, 평가
 2. 협업기업에 대한 이행실적조사
 3. 협업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4. 사업지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5. 지역내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6. 협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7.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②관리기관의 장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중소기업간 협업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협업관련기관 등으로 민간 자율조직인 지방협업기업협의회를 결성·운영토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중소기업부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 39조의3 및 영 제34조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2. 협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3. 협업전문인력 양성 및 지도·연수
4.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국내외 교류회 개최
5. 사업지원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협업수요조사의 실시, 협업기업의 협업유형 및 성과분석
7. 협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협업관리자(PM) 제도의 운영
8. 협업기업 선정 심의
9. 협업기업 선정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10.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
11. 심의위원회 운영
12.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업관리자) ①중소벤처기업부장은 협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업관리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업관리자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협업기업의 선정

제8조(협업체 참여자격) ①협업체내 수행기업은 영 제33조제1항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협업계획 선정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수행기업은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협업계획이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및 재심의 결과 선정불가로 판정된 협업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이후 재신청 할 수 있다.

④중견기업 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은 협업체에 참여기업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요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는 제외한다.

제9조(협업기업 신청절차) ①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기업은 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추진기업은 서류보완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기업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추진기업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추진기업이 서류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협업기업 현장평가 절차) ①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선정을 위해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실무담당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담당자
3.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실무담당자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자
5. 기술성·사업성 평가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중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하는 자

③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협업계획 수행기업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3호 서식의 협업계획 평가보고서를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업기업 심의절차) ①관리기관의 장은 추진기업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협업계획 평가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업계획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업기업 선정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선정 심의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관리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진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추진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업기업 선정 재심의를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추진기업을 평가한 평가단원 및 추진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재심의 한 후 최종 결과를 추진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업계획의 변경승인) ①추진기업은 협업계획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협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일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협업계획의 목표
2. 수행기업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행기업의 변경
4. 협업계획 내용 및 실시기간
5. 수행기업이 제공하는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6. 수행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7. 그 밖에 협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의 주소 변경, 협업담당자 변경 등 협업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승인결과를 추진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관리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추진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발급절차) ①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업기업 선정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진기업의 신청서
2. 협업계획 평가보고서
3. 협업계획 심의평가서

②협업기업 선정 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협업계획서 상의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 원본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1. 협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2. 협업계획 변경승인 심의평가서
3. 확인서 원본

④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기관의 장 및 추진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업자금 지원) ①지원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협업사업 수행을 위해 협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계지원)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원기관의 장에게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지원 사업
2. 자금(시설·운영)지원 사업
3. 컨설팅지원 사업
4. 정보화촉진지원 사업
5. 기술개발지원 사업
6. 투자유치지원 사업
7. 판로 및 수출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이행실적조사 방법) ①영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마다 협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업계획 추진 현황
2. 협업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3.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조사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의 이행실적 조사서를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이행실적 조사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협업기업 선정취소 의견을 받은 경우 이행 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변경 및 중단 권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결과 협업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업기업에게 협업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촉구 및 경고)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협업기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업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행실적 조사시 거짓으로 실적을 제공한 경우
3. 이행실적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15조에 따라 지원된 협업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협업계획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분쟁의 조정)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기업 상호간에 협업계획 실시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업기업에게 이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제21조(선정취소 절차)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협업기업의 선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휴업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업기업이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선정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업기업의 선정 취소 여부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추진기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업계획 완료보고서 제출) ①협업기업은 협업기업 선정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협업계획 완료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계획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에 출장하여, 사업성과 등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협업추진성과 요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받은 중소기업간 협업계획 완료보고서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완료점검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종합 성과분석)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종합분석 및 협업 유형별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협업기업의 추진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전담기관의 직원, 협업관리자, 평가단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협업계획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협업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업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운영비의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한 협업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04월 30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1] 협업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요령 서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협업정보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협업 추진기업 (신청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홈페이지	http://		
총괄책임자	대표자명			
	성명		전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사업명	[] 농공상 융합분야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기업명	대표자	전화	협업참여분야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약에 관한 서류 1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협업계획서

20 . . .

제 출 자 :
(추진기업명)

I **협업계획 요약서**

1. 협업 개요

협업과제명		
사업기간		20 ~ 20
추진기업		
참여기업		
사업비 (백만원)	현 금	
	현 물	
	합 계	

2.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3. 기대효과(기대수익 등)

--

II **협업체 구성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협업참여분야				
기업명				
대표자				
업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립년월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시인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III 협업 추진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2. 주요내용

협업 유형 :

※ (예시) 마케팅-마케팅, 기술개발-생산, 생산-생산, 영업-생산, 기술개발-기술개발 등

협업 추진 내용 및 방법

○

-

※ 협업 추진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협업 추진 체계

○

-

※ 협업체 수행기업의 협업참여분야에 따른 역할에 대해 그림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기술성

○

-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등 협업유형 및 목표에 따라 자세히 기술(항목 첨삭 가능)

시장성

○

-

※ 국내·외 시장규모, 시장특성, 주요 수요처 현황 및 시장진출계획(마케팅계획 등)을 협업 유형 및 목표에 따라 자세히 기술(항목 첨삭 가능)

3. 사업 목표

○

-

※ 협업체 구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협업체의 목표 작성

① 추진기업 (기업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선정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② 참여기업 1 (기업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선정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③ 참여기업 2 (기업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선정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 협업계획 수행기업 전체를 작성

4. 세부 추진일정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추진일정에는 추진내용별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기간을 표시

IV 사업비 투자 계획

1. 총사업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A)	자체자금	정부지원금(B)*	비율(B/A)
			%

* 정부지원금(협업자금융자) 신청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2. 세부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 용도	구분	규모	자금투자		
			자체자금	정부지원금	소계
시설 자금					
운전 자금					
합 계					

주1) 정부지원금은 협업자금융자 신청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주2) 시설자금 : 생산설비를 구입, 개채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과 설비를 개채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주3)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경영 및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3. 기업별 투자비 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기업명	공동이용부문			개별이용부문			총투자비			공동부문 분담비율 (%)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계										계

※ 정부지원금은 협업자금용자 신청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협업 참여확인서

참 여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홈페이지	http://		
총괄책임자	대표자명			
	성 명		전 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사업명	(농공상 융합분야)*							
사 업 기 간	20 ~ 20 (개월)							
협업참여분야 (○ 표시)	제조		R&D		마케팅		지식 서비스	
주 생산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기 협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협업사업 수행기업 현황(별지 1호 서식 붙임3)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1. 기업현황

기업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분	20년	20년	20년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종업원수(명)							

* 지원자가 회사인 경우에 한해 작성
* 사업규모는 직전 3개년도를 작성

2. 주요 경영·기술진 구성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전공, 학위)	주요경력
경영· 기술진					

3. 조직현황

<조직기구표>

* 부서별, 과별 인원수를 기재(전담조직 운영형태 및 연구개발 인력형태도 표기)

4. 연구개발 현황

4-1. 연구개발 인력

성명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주요경력

4-2. 연구개발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개발자 표기)

*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 과거 신청기업의 것, 대표자의 것, 주요 기술진의 것 표기

4-3. 산업재산권

종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용 실시권자

*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등록 ③의장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만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

(평가, 심의)위원 비밀 유지 각서

본인은 협업지원사업의 (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지득한 기업의 기술·경영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고

협업계획 현장평가보고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추진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총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 답 자			(인)
			(인)
			(인)
조 사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 협업기업의 안정성 ◦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협업 추진능력 ◦ 기대효과 등
평가점수	

【붙임】

< 평가 결과 표 >

평가항목			배점		점수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점수	소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85점)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15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0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5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0		
	협업 추진 능력	생산 능력	15		
		마케팅 능력	15		
		연구개발 능력	15		
	기대효과(15점)			15	
합 계			100		

【참고】

< 평가 배점표 >

평가항목	평 가지 표	평 점	점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15)	◦ 협업 추진 필요성(8점)	0점	후 기업의 비전이 없음	
		1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없으나,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성과 등 목표치 존재	
		3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존재하나, 협업과 관련성 없음	
		5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명확히 존재하고,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7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명확히 존재하고,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나, 구체적 실현방안 없음	
		8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명확히 존재하고,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 있음	
		◦ 협업 추진 의지(7점)	0점	협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전혀 없음
			1점	협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는 없으나, 수행기업 대표자의 추진의지 확고함
	3점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중 일부만 전담 인원이 배정됨	
	5점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전담인원이 배정됨	
	7점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모두 전담인원이 배정되어있고, 수행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협업사업관리팀을 구성할 예정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0)		◦ 수행기업 요건의 적절성 (5점)	0점
		1점		개략적 분석을 통해 수행기업이 갖춰야할 역량 정의 함
		3점		수행기업이 갖춰야할 역량을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으나, 적정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5점		수행기업이 갖춰야할 역량을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으며, 최적의 기업으로 협업체가 구성됨		
◦ 협업체 구성의 완결성(5점)		1점		일반기업으로만 협업체가 구성됨
		3점	일부기업만 전문기업으로 협업체가 구성됨	
		5점	수행기업 모두가 전문기업으로 협업체가 구성되어 있음	

협업기업의 안정성 (5)	◦ 경영자 능력 및 신뢰도(3)	1점	경영자 능력과 신뢰도 낮음
		2점	경영자 능력이 높으나 신뢰도 낮음
		3점	경영자 능력과 신뢰도 높음
	◦ 중간관리자 능력(2)	1점	중간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낮음
2점		중간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높음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0)	◦ 제품의 모방 용이성(5)	1점	기술적 모방이 매우 쉬움 (기술개발 필요 없음)
		2점	기술적 모방이 다소 쉬움 (1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3점	기술적 모방이 다소 어려움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4점	기술적 모방이 어려움 (2년 이상 ~ 3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5점	기술적 모방이 매우 어려움 (3년 이상의 기술개발 필요)
	◦ 시장 규모(5)	1점	30억원 미만
		2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점	5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4점	7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점	100억원 이상
생산능력 (15)	◦ 품질관리 정도(5) (싱글 PPM, KS, GQ, ISO9000, ISO 14000, QS 9000 등 품질관련 인증)	0점	0개
		1점	1개
		3점	2개
		5점	3개 이상
		◦ 공정능력 및 관리 수준(5)	1점
	2점		예상되는 제품수량을 맞추기에 공정능력 부족함
	3점		공정능력은 충분하나, 공정관리기법의 수준은 낮음
	4점		공정능력과 공정관리기법의 수준이 높으나, 협업제품과 공정시설이 관련 없음
	5점		공정능력과 공정관리기법의 수준이 높고, 협업제품과 공정시설이 높은 관련성
	*생산시설이 필요없는 협업체의 경우 10점 처리	◦ 주생산품과 협업제품의 연관성(5)	0점
1점			유사품목을 생산해 본 경험은 있으나, 현재 생산은 하지 않음
3점			유사품목을 생산해 본 경험이 있고, 현재 생산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5점			협업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임

능력 (15)	◦ 고객 및 경쟁업체 파악 정도(5)	0점	니즈 및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전무
		1점	고객 니즈는 파악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없음
		3점	고객 니즈와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
		5점	고객 니즈와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도 충분
	◦ 협업제품의 판로대책(5)	0점	판로대책 없음
		1점	판로대책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바이어 또는 판매망 없음
		3점	상당히 구체적인 판로대책이 있으나, 바이어 또는 판매망 없음
		5점	상당히 구체적인 판로대책이 있고, 바이어 또는 판매망도 있음
	◦ 유사제품의 마케팅 경험(5)	0점	마케팅 경험 전무
		1점	마케팅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3점	마케팅 경험은 있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5점	현재 수행하는 마케팅 제품이 주력 사업분야임
연구개발 능력(15) ※ R&D 기능이 필요없는 경우 10점 처리	◦ R&D 수준(5) ※ 특히, 실용신안 건수(출원제외)	0점	없음
		1점	1개
		3점	2개
		5점	3개 이상
	◦ 개발장비 및 인력 보유(5)	0점	개발인력과 개발장비 없음
		1점	개발인력과 개발인력중 하나만 있음
		3점	개발장비와 개발인력이 있으나 협업제품과 관련없음
		5점	개발장비와 개발인력이 있고 협업제품과 관련있음
	◦ R&D능력과 협업기술과의 연관성(5)	0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 수행 경험 전무
		1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3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5점	현재 협업제품과 연관된 R&D를 수행하고 있고, 주력 사업분야임

기대효과 (15)	◦ 협업 후 수행업체의 경쟁력(15)	0점	현재보다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3점	현재와 동일한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6점	재무적 측면에서의 효과 정도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9점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12점	일부 수행업체가 해당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15점	모든 수행업체가 해당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협업계획 심의평가서

협업과제명			
추진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참여기업		대표자	
총사업기간	20 (개월)		
평가일자	20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선정불가		
평가항목	평가의견		
1. 협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기업의 안정성			
3.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협업 추진능력			
5. 기대효과			
총 합 의 견			

위원 : (인)

협업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1. 개최일시 :
2. 회의장소 :
3. 참석자

성명	소속	직위	서명	비고

※ 회의록은 별지에 회의내용 첨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농공상 융합분야

선 정 번 호: 제 호

협업사업명:

협업 추진기업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참여기업명:

선 정 기 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지원사업
의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Certificate of Collaborative Business

Certificate No :

Project :

Main Company :

Representative :

Company Address :

Partner Company :

Valid D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is a
Collaborativ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Day Month Year

(직 인)

Administrato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별지 제6호 서식】

협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추진기업 (신청기업)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홈페이지	http://					
총괄책임자	대표자명						
	성명		전화				
	소속/직위		F A X				
협업사업명		(농공상 융합분야)*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기업명	대표자	전화	협업참여분야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협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변경내용의 신규대비표 1부.	
	3. 협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확인서 원본	
	4. 변경내용 관련 증명자료 1부.	
	5. 협업계획 변경 동의서	
		없음

210mm×297mm[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참고 서식】

협업계획 변경 동의서

1. 협업계획 변경 계획

협업과제명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협업계획 변경요약		

2. 수행기업 동의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에 의하여 협업계획의 변경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분	기업명	책임자	서명
추진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3. 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자체자금		정부지원금	
계획	실조달액	계획	실 투자액	계획	실 지원액

기업별 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자체자금		정부지원	
	계획	실 투자액	계획	실 지원액

자체자금 투자 부진사유

기업명	부진사유	자체자금투자 완료예정일	점검의견

4. 사업비 사용 현황

사용용도	구분	규모 (규격)	자금투자		
			계획(A)	사용액(B)	잔액(A-B)
시설 자금					
운전 자금					
합 계					

5. 사업 추진성과

① 추진주체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② 참여기업 1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③ 참여기업 2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 협업사업 수행업체 전체를 점검 작성

5.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점 검 의 견
협업체 운영현황	
협업 추진일정 대비 진척도	
사업비 투자 현황	
사업비 사용 현황	
협업 추진성과	
협업 추진시 애로사항	
추가 정부지원 필요사항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 담 자			(인)
			(인)
			(인)
조 사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별지 제9호 서식】

협업계획 완료보고서

협업사업명		
사업기간	20 ~ 20 (개월)	
	기업명	대표자
추진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에 의하여 협업계획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추진기업 대표 : (직인)

[확인자]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I

협업계획 요약서

1. 협업 개요

협업과제명		
사업기간	20 ~ 20	
추진기업		
참여기업		
사업비 (백만원)	현금	
	현물	
	합계	

2. 목표 및 내용

목표	
내용	

3. 기대효과(기대수익 등)

--

II 협업체 구성현황

구 분	추진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협업참여분야				
기업명				
대표자				
업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립년월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시인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III 협업 추진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2. 주요내용

협업 유형 :

※ (예시) 마케팅-마케팅, 기술개발-생산, 생산-생산, 영업-생산, 기술개발-기술개발 등

협업 추진 내용 및 방법

○

-

※ 협업 추진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

협업 추진 체계

○

-

※ 협업체 수행기업의 협업참여분야에 따른 역할에 대해 그림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기술성

-
-

※ 국내 외 관련 기술현황,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등 협업유형 및 목표에 따라 자세히 기술(항목 첨삭 가능)

시장성

-
-

※ 국내 외 시장규모, 시장특성, 주요 수요처 현황 및 시장진출계획(마케팅계획 등)을 협업 유형 및 목표에 따라 자세히 기술(항목 첨삭 가능)

3. 사업 추진성과

-
-
-

① 추진기업 (기업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② 참여기업 1 (기업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③ 참여기업 2 (기업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협업기업 선정년도이고, 1차년도는 선정 후 다음연도

※ 협업계획 수행기업 전제를 점검 작성

IV 향후 계획

※ 향후 사업운영 방향, 신규 협업과제 발굴계획 등을 기술

협업 추진성과 요약서

협업과제명				선정일자			
협업제품명				추진기업			
협업 수행기업	대표자	전문기능	협업참여부문	소재지			
협업 경위 및 내용 설명 & 협업 효과							
협업 경위							
협업 효과	기술 고도화						
	제품 경쟁력						
	수익 증대						
	매출 추이	구 분	협업전		협업후		
		기업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향후계획							

협업체 구성 협약서

- 사업명 :
- 협약당사자
 - 추진기업명 대 표 :
 - 참여기업명 대 표 :
 - 참여기업명 대 표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추진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합 계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업체를 구성하여 000 협업사업계획(이하 “협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역할 및 의무)**
- ①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불입의 협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추진기업은 협업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있어 협업체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협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추진기업 : 00제품 생산
 참여기업 : 00 제품 개발
 참여기업 : 00 제품 판매
 - ⑤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동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협의, 조정 등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약 상대방이 협업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정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추진기업은 매월 00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과 협업사업의 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참여기업 추진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협업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추가 소요비용 부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이외에 담당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 소요비용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부담을 결정한다.

제4조(제품공급단가 및 수익의 배분) ①추진기업은 참여기업에게 00제품을 000원/개에 공급한다.

②협업사업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진기업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참여기업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참여기업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③참여기업은 00년 00월 00일부터 본 협약기간 중 매월 00일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에게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협업사업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배상(제조물책임, 환불, A/S)은 추진기업이 책임을 진다. 다만, 사후에 제품 설계의 하자로 인한 품질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참여기업은 추진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②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소유권) ①협약기간 중 협업사업 제품에 관련되어 발명·고안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참여기업이 출원하여 소유하고, 추진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준다.

②협약 기간 완료 후에는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부도, 파산, 화의, 휴업, 폐업,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 취소 처분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협업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협업사업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제1항내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협업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다.

제9조(비밀보장)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사항)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추진기업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붙임 : 000 협업계획 1부

추진기업명 :

대표자

(인)

참여기업명 :

대표자

(인)

참여기업명 :

대표자

(인)